



기초수급신청 많이 묻는 질문 BEST 5!

1 장애인연금을 받아도 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소득반영에 제외됩니다.

2 일반직장에서 근무중인 장애인의 경우 재산이 없다면 월소득 얼마까지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에 들어오나요?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자: 1,841,112원

일반근로·사업소득자: 1,372,223원

3 부모·심한장애인자녀 3인가구 거주 시 별도가구로 자녀만 기초수급지원을 받고있는데 부모의 금융재산 상승 시 자녀의 보장이 중지될까요?

→ 중지되지 않습니다.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기초생계급여는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지원이면 긴급지원을 받다가 기초생계급여가 책정되어도 소급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생계급여에서 긴급지원액의 차액분 발생 시에만 소급지급이 가능합니다.

5 지인은 생계급여 1인가구 82만원을 받았는데 왜 저는 금액이 더 적을까요?

→ 생계급여는 “보충성급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있다면 최대금액에서 차액만 지원됩니다.

(예: 생계급여 최대 820,556원 - 국민연금 30만원

수령 시 = 520,556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주택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합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처리기한 30일/최대 60일)



※급여결정 후 급여지원 및 관리는 구청에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 ♥ 수원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할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 주거급여가 궁금할때? 국토부 콜센터 ☎1600-0777
- ♥ 교육급여가 궁금할때? 교육비 콜센터 ☎1544-9654

사랑해요



수원특례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안내



수원특례시

별도가구보장이란 무엇인가요?

※ 가구 전체로는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 별도가구 수급자 신청



다음의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구로 선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는 배우자가 없는(손)자녀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손)자녀나(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생계, 의료 수급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4,359,205원	7,138,796원

[재산기준]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 수원시는 대도시 기준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유리한 기준들 알려드릴게요

근로사업소득 공제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등록장애인) 근로 · 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예시)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월급 100만원 수령(세전): 소득인정액 40만원
일반직장에서 월급 100만원 수령(세전): 소득인정액 56만원

부양의무자기준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같이살 때 (별도가구적용)	소득 1인 4,359,205원 / 2인 7,138,796원 재산 3.5억원	
따로살 때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기준 상이

재산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 ※ 경기도 수원시 기준
- 재산가액 기본조건: 12,500만원 이내(부채 제외한 순재산액)
- 금융재산: 5,400만원 이내(부채 등 금융재산공제 미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은요? (소득인정액)

(단위: 원)

구분	생계급여 (중위 32%)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8%)	교육급여 (중위 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부양 의무자 기준	있음 (연1.3억원, 재산12억)	있음 (기준상이)	없음	없음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
	+
	재산의소득환산액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1.04%(주거용재산), 4.17%(일반재산), 6.26%(금융재산), 100%(자동차)

*기본재산액공제: 8천만원 / 금융재산공제: 500만원

함께 계산해볼까요?

일반장애인(소득자) 1인가구 월소득 100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 금융재산 3천만원, 자동차 300만원(1600cc)
⇒ 소득인정액 = 560,000원
$$\{(소득 1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0만원) \times 70\% + \{(보증금 5천만원 - 기본재산액 5천만원) \times 1.04\% + (자동차 300만원 - 기본재산액 300만원) \times 4.17\% + (금융재산 3천만원 - 기본재산액 2.7천만원 - 금융공제 300만원) \times 6.26\%\}$$



자동차 적용은 좀 달라요.

- 100% 면제: 심한장애인 사용 2,000CC미만 승용, 전기차(중형)
- 일반재산(4.17% 소득환산):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차 승용 2000cc미만, 전기차(중형 승용), 승합(11~15인) 등